##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승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342

발의연월일: 2025. 2. 21.

발 의 자:김승원·안태준·이원택

박균택 • 이건태 • 서영교

김기표 • 복기왕 • 김용민

이재관 • 문진석 • 장종태

박정현 • 이정문 • 박희승

박지원 · 이광희 · 강준현

의원(18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중심복합도 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되, 외교부, 통일부, 법무부, 국방부, 여성 가족부 등 5개 부(部)는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외교부, 통일부의 경우 국제외교, 남북관계, 국가안보 등 국가의 주요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, 법무부의 경우 범죄예방, 인권향상 등과 관련하여 다른 부처 및 공공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 더하여 여성가족부의 존폐 여부가 미정인 만큼 언급한 두 기관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.

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 제외 기관에서 법무부, 여성가족부를 삭제,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부처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제2항제3호 및 제6호 삭제).

법률 제 호

##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6조제2항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6조(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	제16조(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		
획) ① (생 략)	획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다음 각 호의 부(部)는 이전	2		
대상에서 제외한다.	,		
1. • 2. (생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		
3. 법무부	<u>&lt;</u> 삭 제>		
4·5. (생략)	4·5. (현행과 같음)		
<u>6. 여성가족부</u>	<u>&lt;삭 제&gt;</u>		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		